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외국환거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첫째, 정부의 「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개편방안」 발표(12.8일)에 따라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건당 송금한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둘째, 부담금관리법상 증가산금 요율 상한, 타 법률 등을 감안하여 외환 건전성부담금의 증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 하고자 함.

셋째,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해 업무에 대한 검사·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(안 제15조의3)

- 전업권 통합 무증빙 송금한도(年 10만불) 도입에 따라 소액송금업자가 동 한도 내에서 건당 한도 제한없이 송금업무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
나. 외환건전성부담금 증가산금 요율 하향 (안 제21조의8)

- 부담금관리법상 증가산금 요율 상한, 타 법률 등을 참고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 증가산금 요율을 日 0.033% → 0.022%로 하향

다.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체계 정비 (안 제37조)

- 효과적인 관리·감독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·감독 및 제재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제1항 중 “**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, 고객별 연간**”을 “**고객별 건당 및 연간**”으로, “**수령 누계**”를 “**수령**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8제2호 전단 중 “**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0을 더한**”을 “**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에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**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1호 중 “**같다)**”를 “**같다), 소액해외송금업자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**업무정지**”를 “**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**한정하되,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**”를 “**한정하되,**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**보고 및**”을 “**보고,**”로, “**제2항**”을 “**제2항 및 제4항**”으로, “**요구**”를 “**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**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**한정하되,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)**”를 “**대한 처분에 한정한다)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나. 제21조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의3(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) ① 소액해외 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<u>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</u> 는 각각 <u>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, 고객별 연간</u> 지급 및 <u>수령 누계</u>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	제15조의3(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) ① ----- ----- <u>고객별 건당 및 연간</u> ----- ----- ----- -- <u>수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8(가산금) 법 제11조의3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	제21조의8(가산금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: 제1호의 금액에 <u>1개월이 지날 때마다</u> 체납된 부담금의 <u>1천분의 10을 더한</u> 금액.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	2. ----- ----- <u>체납기간 1일당</u> <u>체납된 부담금에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</u> --- ---. ----- -----.
제3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	제3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

(생략)

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.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(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

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

가. (생략)

나.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

3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

4. 5. (생략)

6.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,

-----.

1. -----

같다), 소액해외송금업자 ---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제21조제4호 내지 제7호
및 제10호의 사항

3. -----

----- 업무정지와
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

4.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래정지 등 행정처분(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<u>한정하되,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</u>)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7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<u>보고</u>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<u>요구</u>(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) 8.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(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<u>한정하되,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</u>) ③ (생략)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	----- ----- ----- <u>한정하되,</u> ----- ----- ----- ----- 7. ----- <u>보고,</u> ----- <u>제2항 및 제4항</u>----- ----- <u>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</u>----- ----- 8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한 처분에 한정한다</u>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
---	--

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 1. <u>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</u> 2. <u>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</u> 3. <u>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(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·재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)</u> 4. ~ 9. (생략) ⑤ ~ ⑦ (생략)	----- -----.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4. ~ 9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753